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819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20184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81977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변론종결 2023. 4. 4.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0. 21. 접수 제186387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은 자신이 운영하던 ‘C내과의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대출금액을 변제기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과 동일한 날짜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B이 D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	2020. 8. 21.	270,000,000	2021. 8. 20.	2020. 8. 27.	300,000,000
2차	2020. 10. 14.	142,500,000	2023. 10. 13.	2020. 10. 19.	150,000,000

나. 원고는 2021. 7. 1. D은행에게 ‘B(C내과의원)’에 대해 2021. 5. 13.경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이행청구를 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D은행은 2021. 9. 2.경 원고에게 '피보증인 B(C내과의원)에 대하여 2021. 8. 21.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10. 14.경 D은행에게 403,111,467원[= {1차 보증금액(원금) 270,000,000원 + 이자 1,829,120원} + {2차 보증금액(원금) 130,625,000원 + 이자 657,3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20. 10. 21.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위 대위변제금 외에도,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1,484,133원이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1)에 따라 1차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21. 8. 21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21. 10. 13.까지 54일간의 미이행금 270,000,000원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은 679,060원($270,000,000\text{원} \times 17/1000 \times 54/365$, 원 이하 버림)이며, 현재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6, 제4, 5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초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082181),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B에게로 회복되더라도, 원고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뿐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본인(주채무자)이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을 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B은 2020.경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입이 급감하였고, 2020. 9.경부터 신용카드(법인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기도 하였으며, 2021. 4.말경2) C내과의원의 영업을 종료하고 연체차임 등을 정산한 뒤 C내과의원의 사업장에서 퇴거한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④ 실제로 2021. 5. 13.경 B이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도 그와 같은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B은 C내과의를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B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대출을 받아 이를 C내과의를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바, '사업(C내과의를원)의 갱생을 위한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최윤영, 판사 김수현

별지

1)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2) 원고 직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갑 제3호증의 5)에는 2020. 4.말경 영업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2021. 4.말의 오기로 보인다.